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59
----------	------

2024년 2월 2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5. 김현기 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4. 2. 16.

다.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4년 2월 2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2.14.)한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1,2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
액을 “월 30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함([별표 1]).

-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¹⁾된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2024.2.14.)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가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와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향(안 별표 1)

- 안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각각 월 150만원(월 30만원↑)과 월 50만원(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 의정활동비²⁾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매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임.
- 그러나 현행 의정활동비는 2003년도에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20년간 동결된 상태임.
-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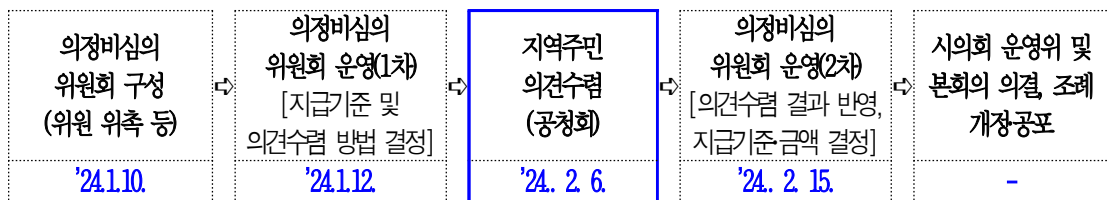
1) 시·도의회의원(월 150만원→월 200만원), 시·군·자치구의회의원(월 110만원→월 150만원)

2)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조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서울시의원, 월 150만원, 2023년 기준)

3)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대한민국시도의

- 이후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장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안)’을 의결(2023.10.27.)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
-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 증대함에 따라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자치구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한액을 인상함.
- 또한, 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로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지급 기준 이내에서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하여, 2024년 1월분부터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함(2024.2.15.).

<의정활동비 조정 관련 절차>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2022.10.20.)

- 4)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 또한,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감안한 입법 조치임.
- 다만,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등의 인상에 앞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례 등에 반영해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증대에 맞춰 의정활동 유인체계 마련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입법 조치임.
- 다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차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제11대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

제2차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개 요

- 일시/장소 : '24. 2. 14.(수) 15:00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재적 10명)
- 회의내용 : 상정안건 심의 및 의결

☐ 결정사항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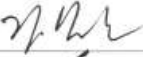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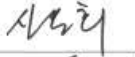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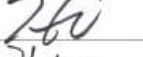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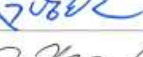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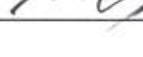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례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2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 현철		위 원	조 순채	
위 원	김 범 한		위 원	신 운 희	
위 원	김 광 기		위 원	양 승 립	
위 원	김 보 리		위 원	임 정 한	
위 원	정 병 필		위 원	조 정 주	

참고2	17개 광역 시도 의정활동비 결정 현황
-----	------------------------------

2024. 2. 15. 현재

구분	1차 심의위원회	1차 결과	의견 수렴	2차 심의위원회	2차 결과	조례 개정
1서울	'24. 1. 12. 완료	50만원	공청회 2. 6. 완료	2. 14. 완료	50만원	
2부산	'24. 1. 22. 완료	50만원	공청회 2. 21. 예정			
3대구	'24. 2. 1. 완료	50만원	공청회 미정			
4인천	'24. 2. 13. 예정					
5광주	'24. 2. 8. 완료	50만원	공청회 2. 26. 예정			
6대전	'24. 1. 30. 완료	50만원	공청회 2. 16. 예정			
7울산	'24. 1. 16. 완료	50만원	공청회 2. 5. 완료	2. 8. 완료	50만원	
8세종	'24. 2. 5. 완료	50만원	공청회 2. 22. 예정			
9경기	'23. 12. 28. 완료	50만원	공청회 1. 29. 완료	2. 5. 완료	50만원	
10강원	'24. 1. 4. 완료	50만원	공청회 1. 23. 완료	2. 1. 완료	50만원	
11충북	'24. 1. 31. 완료	50만원	공청회 2. 26. 예정			
12충남	'24. 1. 22. 완료	50만원	공청회 2. 16. 예정			
13전북	'24. 1. 22. 완료	50만원	공청회 2. 16. 예정			
14전남	'24. 2. 6. 완료	50만원	공청회 2. 21. 예정			
15경북	'24. 1. 29. 완료	50만원	공청회 2. 22. 예정			
16경남	'24. 1. 4. 완료	50만원	공청회 2. 7. 완료			
17제주	'24. 3월 예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찬성 10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5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15일

발 의 자: 김현기, 김 경, 김규남,
김지향, 박유진,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이병도, 이은림, 최재란,
최호정, 허 훈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2.14.)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1,2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월 30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함([별표 1]).
- 나.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란 중 “월 1,200,000원”을 “월 1,5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란 중 “월 300,000원”을 “월 5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 관련)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구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지급액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지급액	월 1,500,000원	월 500,000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2조(의정활동비)

나. 전제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수는 정원으로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5년간(2024~2028년) 비용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3,360,000천원(연간 672,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분	○						
	소계(a)						
세출	제2조(의정활동비)	672,000	672,000	672,000	672,000	672,000	3,360,000
	소계(b)	672,000	672,000	672,000	672,000	672,000	3,360,000
□ 총 비용(b-a)		672,000	672,000	672,000	672,000	672,000	3,360,000

4. 덧붙이는 의견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의정활동비)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3,360,000천원(연간 672,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분	○						
	소계(a)						
세출	제2조(의정활동비)	672,000	672,000	672,000	672,000	672,000	3,360,000
	소계(b)	672,000	672,000	672,000	672,000	672,000	3,360,000
□ 총 비용(b-a)		672,000	672,000	672,000	672,000	672,000	3,360,000

- 의정활동비 ≍ 3,360,000천원(연간 672,000천원)

- 5년간 의정활동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4년~2028년)

- 연간비용 ≍ 500,000원(의정활동비 인상분) × 112명(서울시의원 수) × 12월 = 672,000천원

〈의정활동비 변경내역〉

(단위: 원)

구분	지급액		
	현행	개정 후	증감
계 (의정활동비)			500,000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	1,500,000	300,000
보조활동비	300,000	500,000	200,000